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6
----------	------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8일

발의자 : 정병용 의원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할 수 있으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4월 8일 ~ 4월 14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와 제14조를 내용 변경 없이 조항만 제18조와 제19조로 변경하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각 호의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하남 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p>

	<p>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p>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신 설)</p>	<p>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p>
<p>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신 설)</p>	<p>제1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각 호의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p>제1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하남 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p> <p>2.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p>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p> <p>제17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현행과 같음)</p> <p>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	---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제14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건축일)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상점가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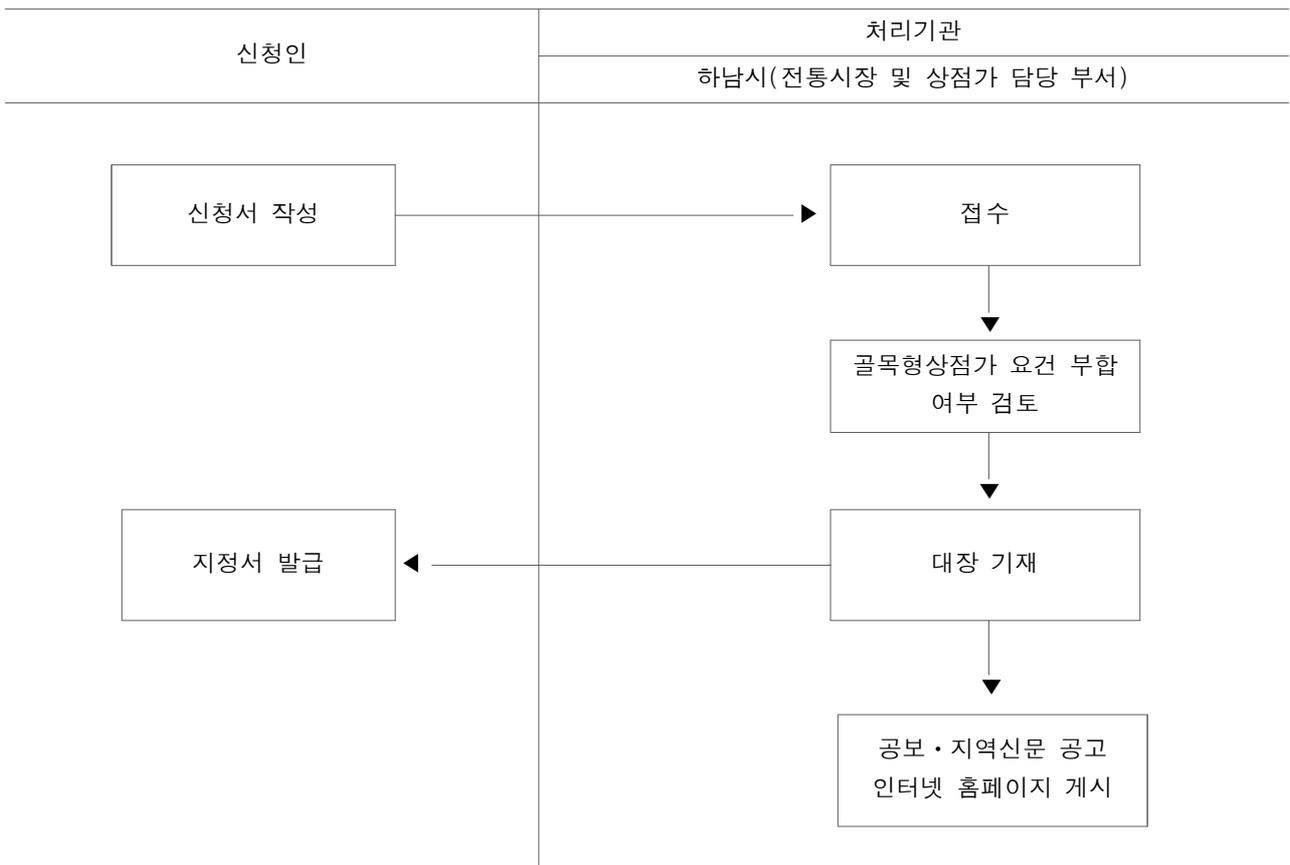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 상점가명: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면적: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